

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제정	1996. 3. 1	조례 제 23호
개정	1998. 5. 6	조례 제 22호
	1998. 7. 3	조례 제 127호(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)
	1998. 10. 8	조례 제 138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
	1999. 2. 5	조례 제 164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
	1999. 4. 3	조례 제 191호
	1999. 12. 24	조례 제 238호
	2001. 3. 16	조례 제 323호
	2003. 3. 21	조례 제 432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
	2005. 10. 5	조례 제 684호
	2005. 10. 27	조례 제 778호(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)
	2009. 4. 24	조례 제1005호
일부개정	2012. 12. 11	조례 제1264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3. 5. 7	조례 제1287호
일부개정	2014. 12. 15	조례 제140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안정된 생활의 영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,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4. 24]

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용인시 노인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4. 12. 15>

1.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3. 삭제 <1998. 5. 6>

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필요할 경우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.

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(2018.5.6.)으로 하되,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2. 15>

[본조신설 2013. 5. 7]

제3조(기금의 용도) 시장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기금을 지원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4. 12. 15>

1. 대한노인회용인시 구지회 및 각급회(분회, 노인학교 등) 지도육성
2.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
3.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지도
4.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지원
5.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
6.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지원
7. 노인문제상담소 운영
8. 노인회보 발간
9.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
제4조(기금의 관리 운용) ① 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여,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고, 여유자금은 「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05. 10. 27, 2009. 4. 24, 2014. 12. 15>

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설정하여 관리한다.

③ 매 연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에 한정하며,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 12. 24, 2005. 10. 5, 2014. 12. 15>

제5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용인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 4. 3, 2005. 10. 5, 2009. 4. 24 2014. 12. 15>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15>

1.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
2. 해당 회계연도 지원계획

3. 기금의 수입 지출 증식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4. 12. 15>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4. 12. 15>

④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명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03. 3. 21, 2005. 10. 5, 2009. 4. 24, 2014. 12. 15>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. <개정 1999. 2. 5, 2003. 3. 21, 2005. 10. 5, 2014. 12. 15>

제7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4. 12. 15>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4. 12. 15>

제8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4. 12. 15>

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신설 2014. 12. 15>

[제목개정 2014. 12. 15]

제9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촉 해제하고,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를 면하는 날부터 위촉 해제한다. <개정 2014. 12. 15>

1.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
2. 해당 위원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

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3.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

[제목개정 2014. 12. 15]

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1998. 5. 6, 2014. 12. 15>

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2. 운용중인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
3. 제5조제2항의 각 호 중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
4. 기금의 지원범위, 대상자 선정, 지원액 결정, 지원의 중지 등
5.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1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,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 <개정 2014. 12. 15>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4. 12. 15>

제11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4. 12. 15]

제12조(기금관리공무원 및 회계관리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. <개정 1998. 10. 8, 2003. 3. 21, 2005. 10. 5, 2014. 12. 15>

1. 기금운용관 :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
2. 분임기금운용관 :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

3. 분임기금출납원 :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팀장

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대장을 비치관리하고,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15>

③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적립기금에 편입한다.

제13조(결산 및 보고)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1999. 4. 3, 2005. 10. 5, 2009. 4. 24, 2014. 12. 15>

②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. <개정 1998. 5. 6>

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용인시 재무회계규칙」이 정하는 일반회계 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15조(실비변상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1998. 7. 3, 2005. 10. 5, 2012. 12. 11, 2014. 12. 15>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1998. 5. 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7. 3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1998. 10. 8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1999. 2. 5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제2조 내지 제3조 생략

부칙 <1999. 4. 3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9. 12. 24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1. 3. 1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. 3. 21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5. 10. 5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27 조례 제778호,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 4. 24 조례 제100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. 1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

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를 인용한 조항은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.

별표 생략.

부칙 <2013. 5. 7 조례 제128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12. 15 조례 제140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